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2021. 1.

이 자료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21.1.1.시행)을 반영하여 사업주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신청절차, 신청서류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21.3.31)

□ 지원요건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①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②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① 무급휴업: ④ 30일 이상 실시, ⑤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⑥ 노동위원회 승인

*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② 무급휴직: ④ 30일 이상 실시, ⑤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⑥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실시, ⑦ 근로자대표 합의

*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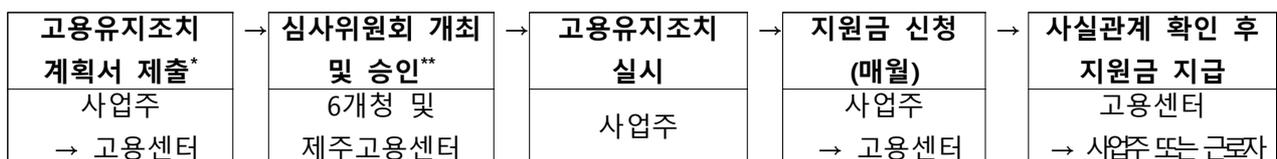
**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 지원금액

구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 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 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 1일 7만원 · 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 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금지업종은 9/10(대규모기업 2/3) 지원('20.11.24~'21.3.31)

□ 지원절차



* 유급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실시 하루전 까지 신고(집합제한·금지업종은 한시적으로 30일 이내 신고 가능)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실시 30일 전 까지 계획서 제출)

붙임 1

고용유지지원제도 비교

구 분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		
	일반업종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일반업종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원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지원 2/3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지원 9/10 대규모 2/3 또는 3/4* * 단축율 5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임금 5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지원금 상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6.6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지원 1일 7만원 대규모 1일 6.6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6.6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18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180일(근로자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 '21년에 한해 90일 연장(연장기간 50만원 장부급)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기준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유지조치 시행 직전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 소재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일 직전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재고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생산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 이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 이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 이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 이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재고량·매출액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고량·매출액 계속 증가(감소)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고량(매출액) 계속 20%이상 증가(감소)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업종·지역 경제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안정·민중이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사전절차요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업) 노동위원회 승인 (휴직)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이상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업) 노동위원회 승인 (휴직)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이상 유급휴직을 1개월이상 실시 	
휴업·휴직 규모율	(휴업)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당월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대비 20% 초과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 단, 조선업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일 이상 실시 피보험자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이상 (19인 이하) ▲ 10명 이상 (99명 이하) ▲ 10% 이상 (100명~999명) ▲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휴직) 1개월 이상 실시 (근로자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일 이상 실시 피보험자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명 이상 (99명 이하) ▲ 10% 이상 (100명~999명) ▲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단 고용위기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해 무급 휴직 허용('22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구분	현행	개선
근로자 지원요건	피보험 가입기간 제한 없음	피보험가입기간 90일 이상 인 자 * 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 까지 피보험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사각지대 해소 (파견 용역 등)	사업주 단위 로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장 단위 로 고용유지조치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① 파견·용역 등은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업체가 고용유지조치 를 실시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② 휴업규모율, 신규채용 여부, 감원 방지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에 한해 적용
조치계획서 제출 기간	(원칙)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예외) ① 기타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②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20일 이내	(원칙)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예외) ①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 ②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30일 이내 ③ 기타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매출액 등 비교시점	매출액 등이 기준달 직전연도 연평균, 직전연도 같은달,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15%이상 감소 * 21년의 경우 '20년과 비교	'21년도는 '19년도 매출액 등과 비교 * 코로나19 장기화로 '20년 매출액 등이 대폭 감소
근로시간 단축 산정 방식 개선	6~4개월전 까지의 근로자 전체 월평균 총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당월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 의 합계 대비 20% 초과 단축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구분	현행	개선
무급휴직 사전요건 확대	3개월 이상 유급휴업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실시	① 3개월 이상 유급휴업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실시 ②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지원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보험자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명 이상 (99명 이하) ▲ 10% 이상 (100명 ~ 999명) ▲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보험자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명 이상 (99명 이하) ▲ 10% 이상 (100명 ~ 999명) ▲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단,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허용(22년 까지)
특별업종 지원기간 연장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총 180일간 지원 * 평균임금의 50%이내 (1일한도 6.6만원)	특별업종 에 한해 지원기간 90일 연장 * 연장기간 동안 월 50만원정액 지급

순 서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2.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2
3.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3
4.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4
5. 지원 상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5
6.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6
7. 고용유지지원금 제출 필요 서류	7
<붙임 1>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신고서	8
<붙임 2> 고용유지(휴직)조치 계획신고서	10
<붙임 3> 고용유지(휴업)조치 지원금신청서	12
<붙임 4> 고용유지(휴직)조치 지원금신청서	14
<붙임 5>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16
<붙임 6>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Q&A	21

1. 고용유지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가요?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할 계획인가요?

-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이거나, 근로자 1인 이상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계획을 사전신청한 사업장에 지급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셨나요?

-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 및 기타 여행업, 이벤트·공연업, 학원업, 숙박업, 보건업(병원 등)의 업종은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수급차질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타 업종의 경우에도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이 어려운 경우, 매출감소가 있으신가요?

- 전년 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재고량 50% 이상 증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 '21년에는 '19년 월평균 또는 '19년 같은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재고량 50% 이상 증가)한 경우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합니다.

- 기준달의 매출액이 (1)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2)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매출액 또는 (3)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합니다.

※ (기준달의 의미)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2월 25일부터 계획을 실시할 경우 기준달은 1월)

4. 휴업, 휴직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셨나요?

-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후 이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고, 휴업, 휴직근로자들에게 **70%이상의 휴업수당과, 휴직수당을 지급** 하셔야 고용유지지원금신청[붙임3,4]이 가능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1. 인터넷신청을 원하시나요?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을 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2. 방문신청을 원하시나요?

- 사업체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을 방문하여 서류 작성 및 신청해주세요.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붙임 5]>

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1.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작성하셨나요?

- 휴업, 휴직 여부에 따라 고용유지(휴업,휴직)조치계획신고서를 작성해주세요.[붙임1,2]

2. 근로자와 휴업, 휴직에 대한 협의를 하셨나요?

- 근로자와 휴업, 휴직기간 및 휴업, 휴직 수당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그 증명서류(별도 양식없음)를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함께 제출해주세요.

3. 기존 근로시간을 증명할 서류가 있으신가요?

- 근로시간 조정 등 휴업을 할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기존의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4.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셨나요?

-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원자재수급 관련 서류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4.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신가요?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근로자 수
1.제조업	C	500명 이하
2.광업	B	300명 이하
3.건설업	F	
4.운수업	H	
5.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6.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7.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도매 및 소매업	G	
10.숙박 및 음식점업	I	
11.금융 및 보험업	K	
12.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위의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2β이 지원되며 1일 한도는 6.6만원입니다.

2. 대규모 기업이신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대규모기업입니다.

대규모기업일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1/2이 지원되며 1일 한도는 6.6만원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률이 50%이상일 경우 2β까지 지원됩니다.

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1 공통 요건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위해서는 ①공통요건(8가지 요건 중 1가지) 및 각 ② 지원금 지원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제출서류 (예시)
①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이상 증가한 경우	재고량대조표
②기준달의 생산량이 (1)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 또는 (2)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생산량 또는 (3)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생산량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생산량대조표
③기준달의 매출액이 (1)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2)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매출액 또는 (3)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매출액대조표
④기준달의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재고량대조표 또는 매출액대조표
⑤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조직구성변경 확인서
⑥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 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생산방식변경확인서
⑦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⑧당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코로나19 관련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 ⑤~⑧을 적용할 경우 관련증빙서류에 대한 고용센터의 검토에 의해 지원유무판단

2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원 요건

1.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수립[붙임1]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2. 수립된 계획에 따라 총 근로시간이 20%를 초과하여 감소
3. 고용유지 기간 동안 휴업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

3 고용유지(휴직)지원금 지원 요건

1.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신고서[붙임2]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2. 수립된 계획 따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

6.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 아래 예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3.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4.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5.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7. 고용유지지원금 제출 서류[요약]

1 고용유지(휴업)지원금

1.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서[붙임1]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고용조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매출액 감소·예약취소 현황 등 관련 서류)
- + <실제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고용유지(휴업)조치 지원금신청서
(휴업수당지급후 매달) [붙임3]

2 고용유지(휴직)지원금

1. 고용유지(휴직)조치계획서[붙임2]
 2.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고용조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매출액 감소·예약취소 현황 등 관련 서류)
- + <실제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고용유지(휴직)조치 지원금신청서
(휴직수당지급후 매달)[붙임4]

년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고용유지조치 예정(변경)일자															계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일자																(일) (기존 근로시간) (단축시간)
		⑩기존 시간																
		단축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		일자																(일) (기존 근로시간) (단축시간)
		⑩기존 시간																
		단축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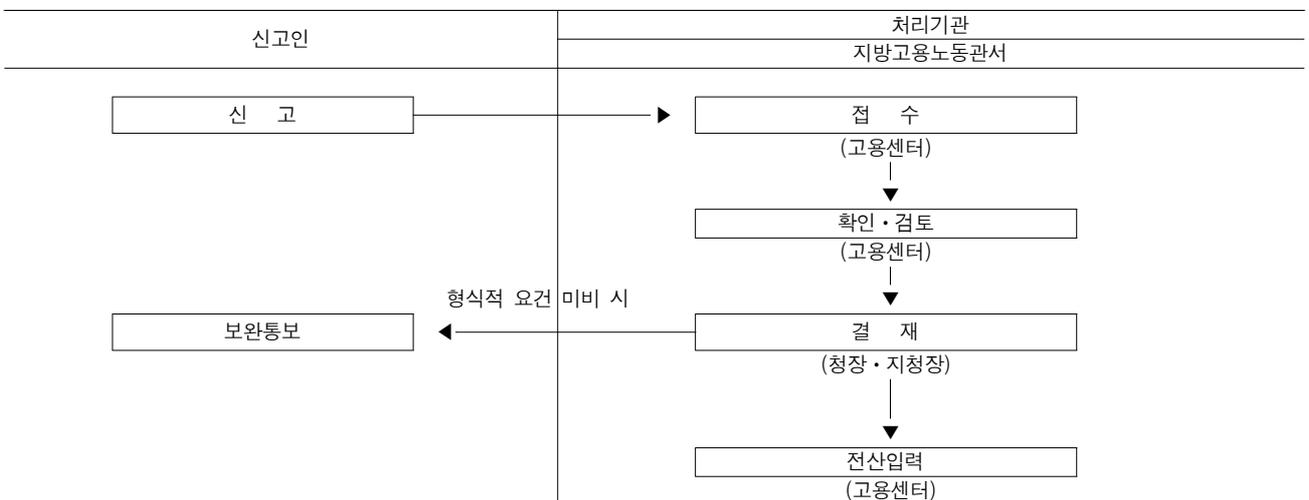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①란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⑤란에 기재된 전체 피보험자수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②란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연장근로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 또는 특정 요일, 특정 주(週)에 일정 시간동안의 연장근로가 반복된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의 초과 근로시간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③란은 ①과 ②를 합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④란은 계획하고 있는 총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기간 및 소정근로일수를 적습니다(예: '20. 3. 1. ~ '20. 3. 31, 22일)
- ⑤란은 (월)의 전체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피보험자,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자는 제외합니다.
- ⑥란은 (월)의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대상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 ⑦란은 고용유지조치 기간(1개월) 동안 피보험자별 근무할 총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⑧란은 ③에서 ⑦을 뺀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⑨란은 ⑧/③×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 ⑩란은 ⑧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 등 금품의 지급기준을 적습니다.
- ⑪란에는 각 일자별 소정근로시간에 반복적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별지 제38호서식]

년 제 차(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 획
 계획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피보험자수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파견·수급 사업장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용(도급) 사업장 관리번호		사용(도급) 사업장 근무 피보험자 수 명	
고용 유지 조치 (휴직) 내용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의 휴직수당지급기준		명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수				
기타	고용유지조치(휴직) (별지 기재 가능)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매출액장부, 생산·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제 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제 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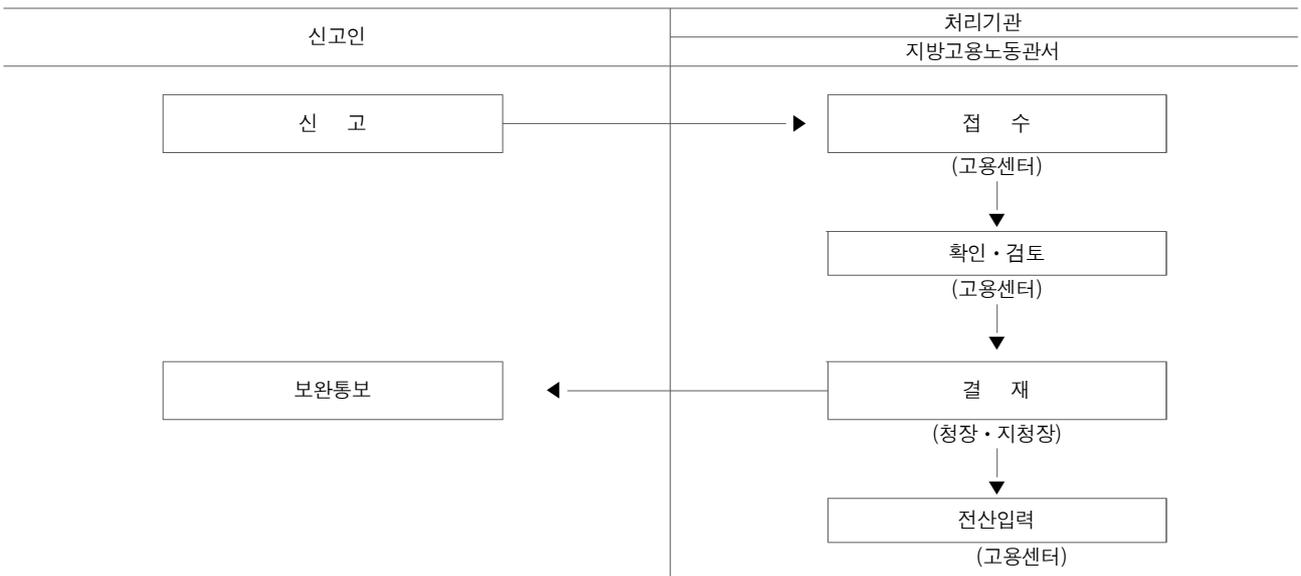
-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 고용유지조치계획은 1개월 단위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 명단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예정(변경)기간	비고
계				명

처리절차



년 월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금 신청 명세

연번	성명 생년월일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	지원금 신청액	비고
<예사>	홍길동 80. 02. 16	100시간	400,000원	266,666원	
2					
3					
4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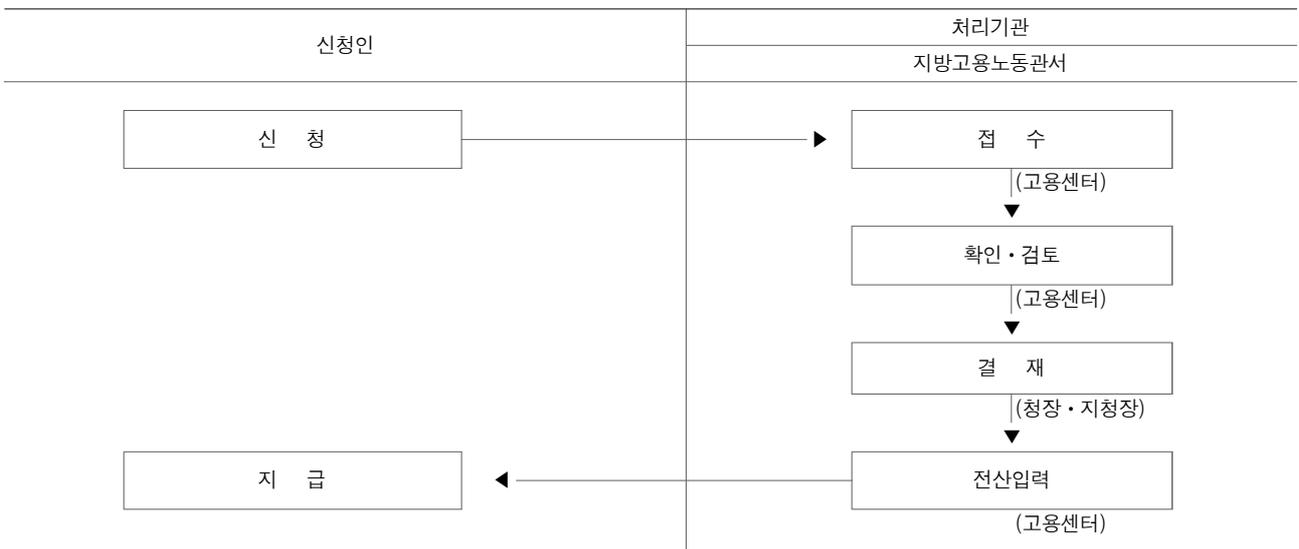
공지사항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은 고용유지조치를 한 (월)의 말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90일 미만(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2. ②란은 ①의 전체 피보험자 중 고용유지조치를 한 피보험자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로 총근로시간이 감소된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3. ③란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총근로시간[해당 월의 전체 피보험자별 소정근로시간의 합계+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피보험자가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④란은 (월) 동안 "①란의 전체 피보험자수가 근무한 총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5. ⑤란은 ③에서 ④를 뺀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6. ⑥란은 ⑤/③×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7. ⑦란은 ⑤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 총액을 적습니다.
8. ⑧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3, 그 외의 기업은 1/2에 표시합니다.
9. ⑨란은 ⑦에 ⑧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금 신청 대상 월의 휴직기간	휴직수당 지급액
				※ 무급휴직일 경우 '무급'이라고 적습니다.
				원
				원
				원
				원
				원
계				원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①란은 고용유지조치를 한 (월)의 말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90일 미만(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 ②란은 ①의 전체 피보험자 중 고용유조치(휴직)를 한 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 ③란은 ②의 고용유지조치(휴직)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수당 총액을 적습니다.
- ④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3, 그 밖의 기업은 1/2에 표시합니다.
- ⑤란은 ③에 ④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붙임 5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 각종 서식은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서울청	서울청	서울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0, 9층 기업지원과 (을지로2가, 을지한국빌딩)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	02-2004-7394~5, 7910~1
	서울청	서울서초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02-580-4972~5, 4922, 4940, 4977~4979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 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10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02-3468-4703, 4708, 4709, 4711~4716, 4721, 4732, 4737, 4784, 4787, 4845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	02-2142-8420, 8426, 8429, 8433~5, 8443, 8456, 8474, 8896, 8404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8층 810호 (도화동, 삼창프라자)	서울특별시 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02-2077-3410, 3422, 6001, 6003~5, 6025, 6030, 6034, 6065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9층 (코레일유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	02-2639-2403~2404, 2411, 2413, 2415, 2333, 2162, 2435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60, 2층	서울특별시 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성북구	02-2171-1833, 1800~5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2층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02-3282-9249, 9353, 9361, 9366, 9379, 9384~6, 9396, 9388~9, 9393~4, 9338, 9309, 9331, 9219, 9348, 9220, 9233, 9215
충부청	충부청	인천 고용복지+센터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과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및 옹진군	032-460-4671~81, 032-460-4683~4, 4686~7, 4689, 4564, 4623, 4723, 4628, 4583, 4560, 4585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 고용복지+센터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	032-540-5641
	인천북부지청	인천서부 고용복지+센터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10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	032-540-2050 032-540-2051~3
	부천시청	부천 고용복지+센터	부천시 길주로 351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부천시	032-320-8972~5, 8927, 8952, 032-310-8855
	부천시청	김포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김포시	031-999-0939~ 031-999-0942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중 부 청	고양지청	고양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031-920-3937 031-920-3962/3964 3957/3988/3997~3998
	의정부지청	의정부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2층 기업지원팀(가능2동 754)	경기도 의정부시·포천시· 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 시· 양주시·연천군·강원도 철원군	031-828-0832~4 0893, 0813, 0838
	경기지청	수원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 2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	031-231-7864
	성남지청	성남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성남시·광주시 양평군·이천시·여주시 하남시	031-739-3170~3 3122, 4991, 4916, 3160, 3163, 3178 (유지-4907,3136,4992,49 36)
	안양지청	안양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세포스빌타워 2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양시·과천시 광명시·의왕시·군포시	031-463-0761~5, 0767, 0769, 0729
	안산지청	안산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고용안정상담: 031-412-6940~6945, 6948,6949 고용유지상담: 031-412-6946~6947
	평택지청	평택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 3층 평택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경기도 평택시·오산시·안성시	031-646-1205
	강원지청	춘천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4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춘천시·화천군·홍천군· 양구군·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033-250-1947, 250-1930, 250-1924
	강릉지청	강릉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강릉고용센터 1층	강원도 강릉시·동해시	033-610-1913
	강릉지청	속초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조양동) 속초고용센터	강원도 속초시·고성·양양군	033-630-1909, 1932
	원주지청	원주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원주시·횡성군	033-769-0960, 0942~3, 0946, 0954, 0958, 0946, 0951
	태백지청	태백 고용복지+센터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강원도 태백시	033-550-8633
	태백지청	삼척 고용복지+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4층	강원도 삼척시	033-570-1906 033-570-1910
	영월출장소	영월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영월고용복지+센터(2층)	강원도 영월군·정선군·평창군	033-371-6254 033-371-6261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부산청	부산청	부산 고용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부산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과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 영도구·남구·부산진구· 연제구·사하구	051-860-1923~7, 1931, 1979, 2072, 2100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 고용복지+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85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별관 7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동래구·금정구· 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051-760-7244~7247,728 8 051-760-7214,7216,728 2,7210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 고용복지+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 강서구	051-330-9970~2, 9945, 9952~5, 9922~3
	창원지청	창원 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고용센터 8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창원시·함안군·의령군·창 녕군	055-239-0960
	울산지청	울산 고용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138(옥산빌딩) 9층 기업지원팀	울산광역시	052-228-1922~4, 1926, 1942
	양산지청	김해 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복지+센터 4층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055-330-6434~6
	양산지청	양산 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양산역로 103, 5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양산시	055-379-2430, 2431, 2422, 2472
	진주지청	진주 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2층 고용노동부 진주지청(별관)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 산청군, 하동군·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055-760-6751
	통영지청	통영 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통영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 ·고성군	055-650-1811~3
대구청	대구청	대구 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대구광역시 중구·수성구·동구, 경산시·영천시·군위군· 청도군	053-667-6006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 고용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3(내당동) DBS빌딩, 7층	대구광역시 남구, 서구·달서구	053-605-6460~6,, 6477 ,6479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 고용복지+센터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053-605-9518~9
	대구서부지청	칠곡 고용복지+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	경상북도 칠곡군, 성주군	054-970-1906~8
	포항지청	포항 고용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경상북도 포항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054-280-3051~2, 3055~7, 3070, 3077, 3132
	포항지청	경주 고용복지+센터	경주시 원화로 396 7층	경상북도 경주시	054-778-2500
	구미지청	구미 고용복지+센터	구미시 백산로118 구미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054-440-3360~4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대구청	영주지청	영주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2층	경상북도 영주시·봉화군	054-639-1146
	영주지청	문경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	054-559-8231
	안동지청	안동 고용복지+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 의성군·청송군·영양군	054-851-8062
광주청	광주청	광주 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7층)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 곡성군·구례군·담양군· 장성군	062-609-8500
	광주청	광주광산 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2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함평군	062-960-3206~8
	전주지청	전주 고용복지+센터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전주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전주시·무주군· 장수군·진안군·완주군· 임실군	063-270-9210
	전주지청	남원 고용복지+센터	남원시 향단로 39, 남원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063-630-3917
	전주지청	정읍 고용복지+센터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063-530-7501
	익산지청	익산 고용복지+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전라북도 익산시	063-840-6523~4, 6507, 6551, 6553
	익산지청	김제 고용복지+센터	김제시 화동길 105	전라북도 김제시	063-540-8404, 8406
	군산지청	군산 고용복지+센터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군산시	063-450-0634, 0636~9 0626, 0648, 0655,
	군산지청	부안 고용복지+센터	부안군 번영로 145, 2층 부안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부안군·고창군	063-580-0515
	여수지청	순천 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전라남도 순천시·보성군·고흥군	061-720-9164
	여수지청	여수 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전라남도 여수시	061-650-0155
	여수지청	광양 고용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8층 커뮤니티센터 8층	전라남도 광양시	061-798-1908
	목포지청	목포 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번지 4층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 신안군·영암군·진도군	061-280-0541~2, 0564, 0552
	목포지청	해남 고용복지+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전라남도 강진군·해남군· 완도군·장흥군	061-530-2912, 2905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대전청	대전청	대전 고용복지+센터	대전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2층 기업지원과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042-480-6432~39, 6012~19
	대전청	공주 고용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충청남도 공주시	041-851-8507
	대전청	논산 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	041-731-8601, 8661
	대전청	세종 고용복지+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60번지 3층	세종특별자치시	044-861-8992~3
	청주지청	청주 고용복지+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비와이씨 청주분평빌딩 7층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 보은군·증평군·옥천군· 영동군	043-229-0704~0709, 0720
	천안지청	천안 고용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 아산시·예산군	041-620-7400
	충주지청	충주 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봉방동) 세일빌딩 4층 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충주시·음성군	043-850-4030, 4032, 4035, 4076
	충주지청	제천 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제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043-640-9322
	보령지청	보령 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 부여군·홍성군·청양군	041-930-6255, 6259 6243
	서산출장소	서산 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서산고용복지+센터 5층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041-661-5614
제주	제주고용센터	제주 고용복지+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센터 2층	제주시·서귀포시	064-710-4462, 4470

<1>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 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붙임 연락처 참조)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



<2>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실제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예시) 1.19~2.18.(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

- 다만, 12월부터 집합금지명령, 집합제한명령으로 인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월까지 지속된 경우 1월 내 사후신고 가능합니다(30일까지 소급지원 가능)

< 12월부터 집합금지명령, 집합제한명령으로 휴업·휴직 등을 실시한 경우 >

<p>※ 사례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조치(휴직)를 '20.12.8.부터 실시하였으나,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를 '21.1.4.에 실시한 경우 <p>⇒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30일 내에 신고하였으므로, 고용유지조치 실시일(20.12.8.)부터 소급지원이 가능</p>	<p>※ 사례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조치를 '20.12.8.부터 실시하였으나,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신고를 '21.1.13.일에 한 경우 <p>⇒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이 지나 신고하였으므로, 30일까지만 소급지원 가능하므로 '20.12.15.부터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소급지원 가능</p>
---	---

<3>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동일합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1/2 ~ 2/3*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의 2/3 ▲대규모기업: 인건비의 2/1 또는 2/3

<5>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6> 근로시간 단축의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적시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20% 초과 단축하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7>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하는 경우부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변경됩니다.
- 다만, 연장근로가 반복·정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8> 총 근로시간에 연장·휴일근로 시간 등도 포함되나요?

-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다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 상당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의미합니다.

* 일시적·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는 해당되지 않음

<9> 연장근로가 반복·정형화되어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이 경우 연장근로가 반복·정형화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증빙할 수 있나요?

-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는 제조업 사업장 등의 경우 매달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 실시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퇴근장부를 통해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증빙된다면 해당 출퇴근 장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10>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 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11>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①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②인사·노무 ③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12> 파견·용역업체의 경우 언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2021년 1월 1일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도 파견업체 등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었으나, 근로자를 여러 사업장으로 파견하는 파견·용역업체 특성 상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에 파견·용역 업체 등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한 개정사항은 1월 1일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부터 적용됩니다.

<13> 파견·용역업체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 소속 피보험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장관리번호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의 명단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다만, 해당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14>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15>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없나요?

-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 지급 제한·추가 징수(최대 5배)·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 실제 이행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서 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